

본 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심의대상, 심의절차, 구비서류, 관련법령, 심의수수료**” 및 “**자료실, 공지사항, FAQ**”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의 업무 진행을 위하여 안내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의절차는 신청 순서 및 수정 광고시안 제출 일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정시안 재심의 독촉, 사후통보 신청 후 결과 처리 독촉, **심의 우선 처리 요청 등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승인(광고안 수정요청)’시 안내한 사항(인정예시) 외 다른 문구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심의기간 지연, 불승인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간혹 폭언, 욕설<전화 상담 포함>의 경우 불이익<상담 종료, 미답변, 법적 대응 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홈페이지 내 접속경로 안내

구 분	경 로
의료광고 관련법규	심의안내 > 관련법규 >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위반 시 처벌기준	심의안내 > 관련법규 >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심의기준 & 인터넷매체 예시	고객마당 > 자료실
사전심의대상	심의안내 > 심의대상
심의절차	심의안내 > 심의절차
구비서류	심의안내 > 구비서류
심의수수료	심의안내 > 심의수수료
홈페이지 이용안내	심의신청 > 이용가이드
사전심의신청	로그인 > 심의신청
다빈도 Q&A	고객마당 > FAQ
현금영수증발행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 > 세무차관관련 서류출력
사후통보신청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후통보하기

## 2. 구비서류관련 안내

※ 신규 신청시, 아래 경로 확인하여 **의료법 및 심의기준에 적절한 광고시안 구성**바람.

- 경로: 의료광고홈페이지> 고객마당 >자료실 >17. 의료광고심의기준\_2019.11.19 기준

23. [보건복지부] 2020.07.06/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가

이드라인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의 파일명은 “**특수문자, 공백**” 등은 제외하여 제출바람.

※ 근거서류 중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가 포함된 경우, **마스킹(또는 삭제)처리 하여** 제출바람.

### (1) 기본서류 관련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은 반드시 첨부바람.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제출 시 뒷장 이하여백까지(의료인 근무이력 등 변경 및 처분사항) 첨부바람.

## (2) 광고시안 관련 (필수자료)

- 매체사 등에 노출되는 형태 그대로 매체사 내규 등 반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제출바람.

- ※ 참고: 광고시안 예시경로, 의료광고홈페이지>고객마당>자료실>9. 인터넷매체 관련 안내 및 예시  
19. 영상광고 관련 안내 및 예시  
24. 네이버 플레이스광고

- 광고내용이 동일하나 크기가 다른 경우, 1건으로 처리 가능함. 단, 각 크기별 광고시안을 하나의 파일로 편집 후 첨부 바람.

- 제출된 광고내용이 상이할 경우 각각의 접수번호로 심의를 신청해야 함.

## (3) 추가증빙서류 관련

(근거자료 및 논문 등 / 광고내용에 따라 제출되어야하는 서류가 상이하며, “의료광고홈페이지>심의안내>구비서류” 경로 참고바람.)

- **의료인 정원, 약력, 의료기기(이미지포함)** 등이 포함된 광고내용은 **반드시 추가 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만 서류가 접수 됨.
-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 광고시안의 경우 국문 번역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 자주 누락되는 증빙서류

- 의료인의 약/경력 등 정보사항이 포함될 경우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캡처**’ 서류 필요
- 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의(약/조산)사신고→신규신고(상단우측)” 상근/기타구분, 의료인 성함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반드시 최근일자(6개월이내)로 **전체캡처본** 첨부 바람.
- 캡처본에 **의료기관명,마지막접속일자,의료인,근무형태가 명시**되어야하며 **자체적으로 편집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캡처시, 상단 마지막접속일자가 반드시 최근 6개월이내의 날짜로 확인가능하도록 캡처하여 첨부바람.
- 캡처본 예시: 의료광고홈페이지>고객마당>자료실>20.모니터링 소명 요청 자료제출 예시>의료인 정원관련 참고바람.

## 3. 심의 관련 안내

### (1) 사후심의 관련

- 최종심의 완료되어 심의필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매체사 내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후심의신청을 통한 광고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건(URL주소 포함)은 일절 불허**하기에, 신규신청으로 신청바람.

다만, 신규신청으로 신청 시,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의견**”에 최종 심의된 심의필번호 및 관련 사항을 기재할 경우 심의기간 단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참고: 의료광고홈페이지>고객마당>FAQ>[사후통보관련] 심의필번호를 받은 후에 광고시안을 변경할 수 있나요?

### (2) 불승인 관련

-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바람. 다만,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의견**”에 불승인된 접수번호 및 불승인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상기 안내사항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재심의**’가 아닌 ‘**신규신청**’으로 진행됨.

### (3) 조건부 승인시(광고안 수정요청) 수정시안 제출 횟수 및 기간 제한 관련

- 조건부승인 시, 심의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조건대로 수정시안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자동 불승인처리 됨.
- 조건부승인 시, 수정시안 및 추가근거자료 **제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함. **4회부터 불승인** 처리됨.
- 광고원안(심의신청시안)과 수정시안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원안과 다른 내용 또는

이미지가 추가된 경우(단, 심의결과에서 내용 또는 이미지의 수정을 요청하여 변경한 것은 제외함), 심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심의결과 지연, 불승인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 유효기간연장관련**

-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된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함.
- 경로: 의료광고홈페이지 >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유효기간연장

※ 참고, 유효기간 이후 계속 사용코자 하는 광고의 경우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통보서의 유효기간만료 이전에 연장신청이 완료되어야함. 아울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 되니 유의바람.